

社団法人 韓國水道協會

(改正 1978. 11. 29.)

(改正 1980. 1. 9.)

定 款

第 1 章 總 則

第 1 條 (名稱) 本 協會는 社団法人 韓國水道協會
(以下 協會라 한다)라 부른다.

第 2 條 (目的) 協會는 上下水道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政府의 上下水道 施策에 協助하여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3 條 (位置) 協會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며 必要한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다.

第 2 章 事 業

第 4 條 (範圍) 協會는 第 2 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.

1. 上下水道施策 및 運營에 대한 建議, 諮問의 応答
2. 上下水道關係 資料의 調査, 統計 및 學術의 研究
3. 上下水道技術의 發展을 위한 研究
4. 上下水道關係標準示方書 및 上下水道用品의 規格에 關한 研究
5. 協會誌 및 기타 上下水道關係 圖書의 出版
6. 上下水道關係 行事開催 및 弘報活動
7. 上下水道關係 國際交流
8. 會員의 權益과 親睦
9.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위한 事業

第 3 章 會 員

第 5 條 (會員資格) 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号에 該當한 者로 한다.

1. (正會員) 正會員은 다음 各項에 該當하는 者로 正會員 2人以上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審査를 받은 者
- 가. (個人會員) 上下水道關係 從事者, 上下水道에 關한 學識 經驗이 있는 者, 上下水道 發展에 크게 貢獻한 者.
- 나. (企業體 會員) 上下水道關係 企業體
2. (名譽會員) 理事會에서 推戴하는 人士
3. (贊助會員) 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後援하는 個人, 또는 團體
4. (準會員) 위 各項에 該當되지 않는 者로 協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刊行물을 받고자 하는 者.

- 第 6 條 (權利) 1. 正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協會의 모든 權益을 均霑하고 協會 運營에 直接 參與한다.
2. 名譽會員은 協會運營에 關한 意見을 提出할 수 있으며 總會나 理事會에서 發言할 수 있다.

- 第 7 條 (義務) 1. 正會員은 定款과 諸規定 및 總會와 理事會의 決議事項을 遵守하며 會費를 納付한다.
2. 名譽會員은 協會의 諮問에 應하며 協會運營에 協助한다.

第 8 條 (褒 賞) 上下水道 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거나 協會運營에 有功한 會員에게는 理事會의 決議로 이를 褒賞한다.

第 9 條 (懲 戒) 會員으로서 上下水道 發展에 沮害되는 行爲를 하였거나 協會의 威信이나 名譽를 毀損케 한 事實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 決議로서 懲戒한다.

第 4 章 任 員

第 10 條(任員) 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.

1. 會 長 1人
2. 副會長 3人
3. 理 事 25人以内
4. 監 事 2人

第 11 條(選 出) 任員은 總會에서 正會員中에서 選出한다.

第 12 條(顧問) 協會에 若干名の 顧問을 둘 수 있다. 顧問은 理事會에서 推戴한다.

第 13 條(補 選) 理事에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任員 選出時 多得點者順으로 이를 補選한다.

第 14 條(任 期) 任員의 任期는 參個年으로 하고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. 但 會長은 壹回以上 連任할 수 없다.

第 15 條(職 務) 1. 會長은 協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. 但 會長 有故時는 會長이 미리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.
2.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.
3. 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協會會務와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을 審議決定한다.
4. 監事는 協會의 財産과 業務 및 經理執行事項을 監査하며 總會,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.
5.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實費와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.

第 5 章 總 會

第 16 條(構 成) 1. 總會는 協會의 最高決議關機이며 正會員으로 構成한다.
2. 總會構成員은 그 議決權을 總會에 參席하는 다른 構成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.
이 경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하여 開會前에 提出하여야 한다.

第 17 條(區 分) 1. 總會는 定期 및 臨時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 會長이 召集한다.

2.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할 때 또는 構成員

參分之壹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3. 會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前項의 要求가 있을 때 이를 參拾日以内に 召集하여야 한다.

第 18 條(附議案件) 總會에 附議하는 案件은 다음과 같다.

1. 定款의 變更
2. 事業報告와 決算의 承認
3.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
4. 任員 選出
5. 其他 理事會에서 附議하는 案件

第 19 條(委 任) 總會는 總會의 決議로서 附議案件의 一部를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.

第 6 章 理 事 會

第 20 條(構 成) 理事會는 會務決議機關이며 會長 副會長과 理事로 構成한다.

第 21 條(召 集)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나 在籍理事 過半數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第 22 條(附議案件) 1.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處理
2. 總會에 附議할 議案의 備審查
3. 名譽會員, 贊助會員, 顧問의 推戴
4.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
5. 會員의 資格審查, 褒償, 懲戒
6. 會費의 額數 決定
7. 對外 建議, 陳情 및 諮問의 處理
8. 豫備費 支出의 承認
9. 其他 會務의 處理

第 23 條(委員會) 1. 理事會는 理事會決議로서 會務의 分野別處理를 위하여 編纂會 또는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會에는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.
但 編纂會長 및 委員長은 任員이 兼任할 수 있다.

第 7 章 事 務 機 構

第 24 條(事務局) 協會의 事務를 分掌處理하기 위하

여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과 職員을 두되 그에 必要한 規定은 따로 定한다.

第25條(事務局長 및 職員의 任免) 1.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提請에 依하여 會長이 任免하며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.

2. 事務局長은 理事를 兼할 수 있다.

第 8 章 財 政

第26條(會計年度) 協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31日까지로 한다.

第27條(資産構成) 協會의 資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.

但 그 區分은 財務 會計規程으로 定한다.

第28條(經 費) 協會의 經費는 다음 歲入으로 充當한다.

1. 會 費
2. 特別會費
3. 補 助 金
4. 贊 助 金
5. 事業收入
6. 其他收入

第29條(會 費) 會費는 個人會費와 企業體會費로 區分한다.

但 그 額數는 理事會에서 定한다.

第30條(特別會計) 協會는 事業의 効率的인 運營과 獨立採算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은 特別會計로 할 수 있다.

第31條(監 查) 監事는 協會의 會計에 關한 事項을 年 2回以上 監査하여야 한다.

第32條(豫算의 追加更正) 總會에서 承認받은 豫算에 대하여 理事會의 決議로 追加 또는 更正을 할 수 있다.

但 總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.

第 9 章 補 則

第33條(定款改正) 定款의 改正은 理事會의 決議나 在籍代議員 參分之壹 以上이 連署하여 總會에 提出되며 總會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員 參分之貳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.

第34條(規 程) 本 定款 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.

第35條(定足數) 總會는 構成員 五分之壹 以上 出席에 그 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하며 기타 會議는 在籍 參分之壹 以上 出席에 그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.

第36條(議事錄) 協會의 모든 會議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그 議事錄에는 日時와 場所 會議 經過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理事의 記名捺 印을 받아 保管한다.

附 則

第37條(施行日) 本 定款은 社團法人의 認可를 얻음으로서 그 効力이 發生한다.

第38條(經過措置) 發起人은 協會의 設立과 同時에 當然히 會員이 되며, 設立登記 完了時까지 總會의 權限은 發起人會가 理事會의 權限은 發起人會에서 選出된 理事로서, 構成된 理事會가 各各 이 를 代行하며 追認받지 아니한다.